

문서번호 : 아이에스동서 개발영업 17 - 86호

발행일자 : 2017년 08월 07일

수 신 : 분양계약자님 제위

제 목 :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소 안내의 건

1. 계약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오며, 하시는 모든 일이 일익 번창하길 축원합니다. 현재 저희 아이에스동서는 계약자 여러분의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지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당사는 성실시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하남시의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소 결정(부과 취소일 : 2017.07.24.)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입주 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환급 사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에 의거 부과 취소

2) 환급 대상 : 잔금 완납 분양계약자

3) 환급 방법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조 제4항에 의거)

① 잔금 납부 시, 해당 금액만큼 감액 (분양가 감액으로 취득세 동일 비율 감액)

→ 기간이자 포함 금액임.

② 별도의 환급 신청이나 분양계약서 수정 없이 감액된 분양가의 정산내역서 발행

4) 환급 금액 (세대별 상이)

구 분	금 액	비 고
학교용지부담금	총 공급대금(분양가) X 0.8%	
기간이자	학교용지부담금 X 이자율 X 납부기간 / 365	이자율 적용 기준 : 기획재정부령
환급 금액 예시 (74타입 11층이상 분양가 기준)	학교용지부담금 : 3,112,000원 + 기간이자 : 121,160원 <hr/> 합계 : <b>3,233,160원</b>	

註. ① 상기 총 공급대금은 아파트 분양가이며, 발코니 확장 및 별도계약품목 등은 부과/환급 대상에서 제외됨.

② 분양계약체결 시점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시기가 다르며, 이에 따라 분양가가 동일하더라도 세대별로 환급 받는 기간이자는 상이할 수 있음. 끝.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민 석 (직인 생략)